

-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회운영위원회
전 문 위 원

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

2014. 8. 18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4. 7. 30.
- 나. 발 의 자 : 박승희·구재용·최석정 의원(찬성자 20인)
- 다. 회부일자 : 2014. 7. 30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8. 18. (제2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박승희 의원
 - 검토보고 : 임조순 수석전문위원
 - 질의 및 토론
 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나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13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(PX) 제조시설과 연간 50만 톤 규모의 벤젠 생산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, 현재까지 주거지역과의 분리를 위한 차단녹지 설치 등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조차 없이 공장증설 및 준공을 강행하였음.

-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에는 신석초등학교와 신광 및 동남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,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800m 안에는 신현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있으며, 청라국제도시와도 근거리이고, 서구주민 50만 명 중에 절반이 직·간접 피해 영향권 안에 있어 항상 서구 주민들은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환경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.
- 이로 인해 서구지역에서는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, 심지어 공장 가동 반대운동을 벌여온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해 납세 거부 움직임과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.
-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보다 나은 환경과 자녀교육을 위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고, 부동산은 실거래 가치하락으로 경제적 손실 등 지역경제가 파탄직전에 있어 서구 주민들의 안전권, 환경권, 재산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.
- 또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인·허가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, 오히려 시민들은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및 도시계획·재난·안전·보건·환경 분야 등 직·간접적인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, 산업경제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.

다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
 - ※ 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10인 이내

○ 활동범위

-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등 인·허가 절차의 적정성
-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·안전사고 방지 대책
- 악취, 소음,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
-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
-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해소 대책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안전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, 증설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해당 지역 주민 13,590명이 서명 날인한 청원서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되었고, 인천시에서도 감사('13.10.21 ~ 11.01)를 실시하여 SK인천석유화학(주)과 서구청 등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,

○ 서구 민선6기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 6월, 전임(前任) 구청장은 준공을 승인하고, 시에서도 구청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 결과 이루어진 공장 가동은 나프타 공기 중 유출, 화염 발생 등의 사고로 이어져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바,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본 사안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서구의회에서 이미 본 사안과 관련하여 “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” 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는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와 활동이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,
- 또한, 본 사안과 관련된 쟁점사항 다수가 서구청장의 소관사항이나, 본 특별위원회가 서구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고,
- 아울러, 금년 개최되는 국제대회 기간 중에는 시 행정력이 집중되고, 의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는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회 종료 이후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

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.

-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유일용 위원
 - 위원회 명칭을 “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함을 건의함

< 답 변 >

- 박승희 의원
 - 동의함

< 질 의 >

- 장현근 위원
 - SK 입장은 청취했는지?
 - 주민들 입장도 공감하지만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함

< 답 변 >

- 박승희 의원
 - 특위 활동중에 주민들과 SK측의 입장을 함께 청취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오홍철, 유일용, 장현근, 김경선, 박병만, 박영애, 박종우
신은호, 이강호, 정창일, 허 준 위원 (수정안 동의)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위원회 명칭을 “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발 의 안	수 정 안
<p>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</p> <p>1. 주 문</p> <p>○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</p>	<p>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</p> <p>1. 주 문</p> <p>○ ----- ----- 『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』 ----- --.</p>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11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9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【붙임1】 수정안

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

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에서

“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”를 “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【붙임2】 수정안 대비표

수정안 대비표

발 의 안	수 정 안
<p>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</p> <p>1. 주 문</p> <p>○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</p>	<p>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</p> <p>1. 주 문</p> <p>○ ----- ----- 『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』 ----- --.</p>

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13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(PX) 제조시설과 연간 50만 톤 규모의 벤젠 생산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, 현재까지 주거지역과의 분리를 위한 차단녹지 설치 등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조차 없이 공장증설 및 준공을 강행하였음.
-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에는 신석초등학교와 신광 및 동남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,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800m 안에는 신현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있으며, 청라국제도시와도 근거리이고, 서구주민 50만 명 중에 절반이 직·간접 피해 영향권 안에 있어 항상 서구 주민들은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환경 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.
- 이로 인해 서구지역에서는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, 심지어 공장 가동 반대운동을 벌여온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해 납세 거부 움직임과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.

-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보다 나은 환경과 자녀교육을 위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고, 부동산은 실거래 가치하락으로 경제적 손실 등 지역경제가 파탄직전에 있어서 구주민들의 안전권, 환경권, 재산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.
- 또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인·허가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, 오히려 시민들은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및 도시계획·재난·안전·보건·환경 분야 등 직·간접적인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, 산업경제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.

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
 - ※ 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10인 이내
- 활동범위
 -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등 인·허가 절차의 적정성
 -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·안전사고 방지 대책
 - 악취, 소음,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
 -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
 -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해소 대책 등

4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5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